아산 신창 1차 광신프로그레스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공동주택과 - 23630호 (2025.07.0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77-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2층, 지상20층 5개동 총 450세대
[특별공급 243세대 포함(기관추천 44세대, 다자녀 44세대, 신혼부부 103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4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6년 09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내진설계에 관한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 0.207g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25000248	01	084.9968A	84A	84.9968	29.0357	114.0325	52.8165	166.8490	50.9553	224	258	25	25	59	7	23	139	119	14
				84A-2	84.9968	27.9111	112.9079	52.8165	165.7244	50.9553	34									
		02	084.9941B	84B	84.9941	29.7617	114.7558	52.8147	167.5705	50.9537	156	192	19	19	44	5	17	104	88	8
				84B-2	84.9941	28.6372	113.6313	52.8148	166.4461	50.9537	36									
	합 계											450	44	44	103	12	40	243	207	2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주택형(약식표기)	층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건축비	대지비	합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회(30%) 2025.09.20	2회(30%) 2025.12.20	잔금(30%) 입주지정일
084.9968A (84A)	1층	12	250,601,051	83,593,949	334,195,000	33,419,500	100,258,500	100,258,500	100,258,500
	2층	12	258,900,051	83,593,949	342,494,000	34,249,400	102,748,200	102,748,200	102,748,200
	3층	12	262,193,051	83,593,949	345,787,000	34,578,700	103,736,100	103,736,100	103,736,100
	4~5층	24	265,815,051	83,593,949	349,409,000	34,940,900	104,822,700	104,822,700	104,822,700
	6~9층	48	268,779,051	83,593,949	352,373,000	35,237,300	105,711,900	105,711,900	105,711,900
	10층이상	116	273,719,051	83,593,949	357,313,000	35,731,300	107,193,900	107,193,900	107,193,900
084.9968A (84A-2)	1층	2	247,305,051	83,593,949	330,899,000	33,089,900	99,269,700	99,269,700	99,269,700
	2층	2	255,522,051	83,593,949	339,116,000	33,911,600	101,734,800	101,734,800	101,734,800
	3층	2	258,783,051	83,593,949	342,377,000	34,237,700	102,713,100	102,713,100	102,713,100
	4~5층	4	262,369,051	83,593,949	345,963,000	34,596,300	103,788,900	103,788,900	103,788,900
	6~9층	8	265,304,051	83,593,949	348,898,000	34,889,800	104,669,400	104,669,400	104,669,400
	10층이상	16	270,195,051	83,593,949	353,789,000	35,378,900	106,136,700	106,136,700	106,136,700
084.9941B (84B)	1층	6	252,723,676	83,591,324	336,315,000	33,631,500	100,894,500	100,894,500	100,894,500
	2층	8	261,074,676	83,591,324	344,666,000	34,466,600	103,399,800	103,399,800	103,399,800
	3층	8	264,388,676	83,591,324	347,980,000	34,798,000	104,394,000	104,394,000	104,394,000
	4~5층	16	268,034,676	83,591,324	351,626,000	35,162,600	105,487,800	105,487,800	105,487,800
	6~9층	32	271,016,676	83,591,324	354,608,000	35,460,800	106,382,400	106,382,400	106,382,400
	10층이상	86	275,987,676	83,591,324	359,579,000	35,957,900	107,873,700	107,873,700	107,873,700
084.9941B (84B-2)	1층	2	249,427,676	83,591,324	333,019,000	33,301,900	99,905,700	99,905,700	99,905,700
	2층	2	257,697,676	83,591,324	341,289,000	34,128,900	102,386,700	102,386,700	102,386,700
	3층	2	260,978,676	83,591,324	344,570,000	34,457,000	103,371,000	103,371,000	103,371,000
	4~5층	4	264,588,676	83,591,324	348,180,000	34,818,000	104,454,000	104,454,000	104,454,000
	6~9층	8	267,542,676	83,591,324	351,134,000	35,113,400	105,340,200	105,340,200	105,340,200
	10층이상	18	272,464,676	83,591,324	356,056,000	35,605,600	106,816,800	106,816,800	106,816,800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7.14.(월)	2025.07.15.(화)	2025.07.16.(수)	2025.07.22.(화)	2025.07.23.(수) ~ 2025.08.03.(일)	2025.08.04. (월) ~ 2025.08.06.(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60)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세대)

구 분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6	5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3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5
	중소기업 근로자	5	4	9
	장애인	9	7	16
	소계	25	19	4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5	19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59	44	10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5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23	17	40
합 계		139	104	243

2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4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장애인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4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3% 범위 : 103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 40세대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3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 분	내 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비 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4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정당 당첨자) : **2025.08.04.(월) ~ 2025.08.06.(수)** [3일간 / 시간 : 10:00 ~ 16:00]
▪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60)** ☎ 041-545-2008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시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됨.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체 결	서류유형 필 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통지)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에 한함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계약시(본인이외)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에 한함, 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용 접수불가)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금,중도금,잔금)	광주은행	1107-021-444707	코리아신탁(주) (외1인(주택도시보증공사광주전남지사))

5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비 고
84A, 84A-2	15,000,000	1,500,000	13,500,000	
84B, 84B-2	15,000,000	1,500,000	13,5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권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잔금	광주은행	1107-021-812052	코리아신탁(주)	입금시 비고란에 동 호, 성명필히 기재 요망 (예 :102동 503호 홍길동 → 1020503홍길동)

※ 추가선택품목(별도 유상옵션)은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신우전기엔지니어링	㈜에이프러스씨엠 건축사사무소	㈜에이프러스씨엠 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599,073,000	362,999,791	65,000,000	75,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5-101-0002400 호	111,288,144,8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증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 공 사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비 고
상 호	㈜ 유노산업	㈜ 광신종합건설	코리아신탁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69-1, 2층(풍암동)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1길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200111-0639084	200111-0218557	110111-2937831	

■ 홈페이지 : www.asan-gwangshin.com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60
■ 분양문의 : ☎ 041-545-2008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7.04.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